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장비를 위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박성연 의원 외 27명
- 나. 의안번호 : 제 604 호
- 다. 발의일자 : 2023. 3. 28
- 라. 회부일자 : 2023. 4. 03

## 2. 제안이유

-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된 사항과 「소방기본법」 등이 개편된 사항 등을 적시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

한 법률」 또는 「소방기본법」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재예방법)」로 분리하여 제·개정(2022.12.1.)됨과 동시에 「소방기본법」도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
- 인용 조문 및 명칭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임.

[표]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현황 ([붙임 1]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)

| 구분 | 조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내용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 |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2  |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3  |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4  |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             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5  |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<br>- 한글 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 개정  |
| 6  |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7  |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        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8  |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9  |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                 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 |
| 10 |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|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<br>-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 사항 반영<br>(화재경계지구 → 화재예방강화지구, 소방특별조사 → 화재안전조사) |

- 이는 기존의 인용 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‘화재예방’ 분야와 ‘소방시설’ 분야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규정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재예방법)」을 분리하여 제정하고,
- 현행 법률의 제명을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로 변경하는 한편, 이에 따른 「소방기본법」도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에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.
-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조례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조례 개정의 시차가 발생하여 시행상의 혼란과 각각의 입법절차로 인한 행정낭비·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제처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는 방식을 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2018)’에서 제시하고 있는바, 본 조례안과 같이 일괄 정비 방식이 적절하다 사료됨.

[붙임 1]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

## 〈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〉

###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</p> |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소방시설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

**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다중이용시설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략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① 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<br/>-----<br/>-----.</p> |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7조(화재 및 재난방지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도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 | <p>제7조(화재 및 재난방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 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|



**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포상금 등 지급 대상)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(이하 “포상금 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)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“불법행위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-----.</p> <p>제2조(포상금 등 지급 대상) ①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</p> |

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 
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 
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  
설에 대하여 폐쇄·차단(잠금을  
포함한다) 등을 하는 행위

3. (생략)

제4조(접수 및 처리) ① (생략)

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 
현장을 확인한 후, 별지 제3호 서  
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 
다. 다만,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  
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 
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 
있다.

한 법률」 제12조제3항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접수 및 처리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 
----- 별지 제3호서식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**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4조(소방안전지도의 구축)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“소방대상물”이라 한다.)의 소방활동 정보카드</p> <p>3. ~ 11. (생략)</p> | <p>제4조(소방안전지도의 구축)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|

**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|---|
| <p>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·확인 등) ① 시장 및 구청장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·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)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.</p> | <p>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·확인 등) ① -----<br/>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<br/>----- 제10조<br/>제1항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) -----<br/>----- 법 제12조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
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0조(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지하보행로의 채광·환기 및 피난·안전에 관한 설비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, 「<u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,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,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</p> <p>2. ~ 7. (생략)</p> | <p>제10조(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|

**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|
| <p>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</p> <p>① 소방기본법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·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p> | <p>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</p> <p>①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법 제24조제1항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| <p>제3조(불 피움 등의 신고)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</p>  | <p>제3조(불 피움 등의 신고) ① 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-----<br/>-----</p>  |

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·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(팩스를 포함한다)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·장소는 소방대상물(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관계지역(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소방대상물 중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한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제 6호-----  
-----  
-----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 제1호-----  
----- 「소방기본법」 제2 조제2호-----  
-----  
-----

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법 제52조제2항제1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**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화재경계지구“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3. “관계인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)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<u>화재경계지구</u>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)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<u>화재경계지구</u>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<u>소방특별조사</u>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<u>화재경계지구</u>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”란 「<u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3. ----- 「<u>소방기본법</u>」 제2조제3호-----.</p> <p>제4조(<u>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</u>) --<br/>----- 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<br/>-----.</p> <p>제5조(<u>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</u>) ① -----<br/>-- <u>법 제18조제3항</u>----- 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화재안전조사</u>-----<br/>-----.</p> <p>② -----<br/><u>법 제18조제5항</u>----- 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